한국교육개발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유의사항

□ 주요사항

-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심의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활동 여부에 대한 심의이므로 모든 창작활동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- 졸업을 위한 졸업작품전(공연) 및 재학 중의 활동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취업통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하나의 작품에서 인정 가능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원은 졸업생 수의 5% 이내로, 이를 초과하는 활동실적은 인재개발센터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. 따라서 각각의 전시·공연장 이용계약을 통해 각 활동에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취업통계에 유리합니다.

※ 사례: 공연명 "숙명의 사계"로 5/10~5/13 동안 총 4일, 4명의 학생이 참여한 경우, 동일 공연명으로 모두 심의 대상(불인정 가능) 되나, 공연명을 "숙명의 봄"(공 연일 3/10), "숙명의 여름"(공연일 6/10), "숙명의 가을"(공연일 9/10), "숙명의 겨울"(공연일 12/13)로 공연 시 공연에 참여한 출연자 각각 인정됨

□ 한국교육개발원 지침서

▷ 정의

• 조사기준일(2023.12.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 준일(2023.12.31.)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

항목	인정조건		
공연	- 공연활동에 참여한 자(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)		
전시	- 기간 내에 작품을 제작하고, 전시활동에 참여한 자 (출품자 및 스태프 포함)		
	-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출판 및 출반활동에 참여한 자		
출판 및 출반	오프라인	1) 출판 및 출반사: 사업등록 3년 이상 ※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 2) 초판: 500부 이상	
	온라인	1) 출판 및 출반사: E-book 발간 전문업체 2)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	
영상제작물	- 온·오프라인 상영 및 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(영화·영상 출연자, 시나리오 및 대본 작성, 기타 스태프 포함)		
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	- 「저작권법」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를 허가받은 기관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해 인정 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한 자		

▷ 전년대비 변경사항

• 5% 초과기준의 개념 변경 및 적용범위 확대 ✓ 5% 초과기준 개념 변경

기존	5% 초과 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판단
변경	5% 초과 시 불인정함. 단, 창작활동의 성격상 공동참여의 사유가 충분하거나 공동작업이 필요한 특 정 예술계열 학과에 한해 심의 대상으로 선정함.

✓ 5% 초과 적용범위 확대

기조	LUQ
기준	내용
장소	동일학과 졸업자들이 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(14일 이내)동안 공연·전시 등에 연속하여 참여한 경우, 해당 활동들은 동일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5% 기준적용
활동	여러 학과에서 하나의 공연·전시에 참여하는 경우, 해당학과를 합쳐서 학과 인원 초과에 대한 별도의 비율 제한 적용 → 기준 : 2개 학과(4%), 3개 학과(3%), 4개 학과(2%), 5개 학과 이상(1%) 예) 3개 학과가 한 전시에 참여한 경우 3개 학과 총 인원의 3% 기준 제 한을 적용

▷ 주요 심의내용

-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심의위원회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활동 인정 여부를 정성 평가 하는 심의조직으로써, 심의위원 및 세부 심의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.
- 심의 대상 선정 기준
 - ① 5% 초과 기준에 해당되며, 초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
 - 5% 초과 시 공연 및 전시의 성격상 공동참여의 사유가 충분하거나 공동작업이 필요한 특정 예술계열 학과는 심의대상자로 선정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함.
 - ② 스태프의 역할이 모호한 경우
 - ③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,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
 - ④ 비예술계열 학과에서 2명 이상 실적을 제출하거나, 한 학과에서 전공과 무관한 실적을 2명 이상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제출하는 경우
 - ⑤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▷ 유의사항

-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 제7조(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) 및 제8조(표준계약서의 제정·보급)에 준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경우 인정 불가함(부록 참고).
 -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반드시들어가야 하며, 계약 당사자 간 서로 주고받은 계약서이어야 함.
 - 단체 계약 시에도 각 개인의 서명 필수
 - * 양식 :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mcst.go.kr) > [자료공간] > [법령자료] > [표준계약서]
- 졸업 후~조사기준일 사이의 실적만을 인정하며, 전시의 경우 졸업 전 제작한 작품(졸업 작품, 재학중 과제 등)으로 졸업 후 전시 실적으로 제출하여도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 정하지 않음.
 - * 각 분야별 실적 인정기간은 부록 참고
- 스태프의 정의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(문화체육관광부 예규) 제4장 제16조(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)에 의거함(부록 참고).
- 허위 개인창작활동 및 증빙자료의 위·변조 의심사례 발견 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.
- 현장점검 시 졸업 후 작품 여부 및 실제 전시활동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을 요청을 할수 있으므로 졸업 작품, 작품 제작연도 확인자료(작품 보증서) 중 택 1 및 계약금액 입금 내역, 전시 당시 사진 중 택 1 하여 구비할 것을 권장함(단, 현장점검 시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창작활동종사자로 인정 불가).
-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고,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와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자는 「기타」로 일괄 처리함.

▷ 증빙자료

• 항목에 따라 아래의 증빙자료 모두 제출

항목	증빙자료		
공연	-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자 등록증 -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-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계약서 - 팸플릿 또는 해당 공연 관련 책자		
전시	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자 등록증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사와의 계약서팸플릿 또는 해당 전시 관련 책자		
출판 및 출반	- 출판 및 출반사 사업자 등록증 - 졸업자와 출판 및 출반사와의 계약서 - 인쇄 및 출반 증명서 - 발간된 출판·출반물 원본(주요 부분만 스캔)		

항목	증빙자료		
	- E-book 및 출반물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-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 -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·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		
영상제작물	-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(영상물,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.) - (선택) 작품 참여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(엔딩크레딧 캡처화면 등)		
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	- 신탁기관1)과의 신탁체결서 또는 신탁증서(저작권 신탁증서, 저작인접권 위탁 증서 등) -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(협회 사이트의 수입내역 캡처화면, 2023년 원천징 수영수증 등) - (선택) 곡 또는 앨범 발매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2) 1) 저작권법 제105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)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신탁단체로 저작권위탁관리업시스템의 업체현황에서 신탁단체로 등록된 단체 2)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(2023.12.31.)까지의 기간 내 발매 및 활동 확인을 위함. 필수 제출은 아니나 심의위원회에서 앨범 발매일에 대한 문의가 많으므로, 미제출 시 추후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.		

- ✓ 항목별로 요구된 증빙자료 중 일부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한 예술활동증명, 예술인패스,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
- ✓ 증빙자료는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인정여부 판단 예정

▷ KEDI 검증사항

- 학교 제출 증빙자료 전수 검증
- 5% 초과 및 심의 대상 여부 검토

▶ FAQ

Q1. [지침] 예술계열 관련 학과의 졸업자만 인정되나요?

→ 졸업자의 학과와 관련 없이 제출된 증빙자료(실적)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. 그러나 학과 특성과 관련 없는 작품을 제출하거나 비예술계열 학과에서 작품을 2명 이상 제출 하는 경우는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.

Q2. [기타] 비예술계열 학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→ 한국교육개발원의 7대 계열 중 예체능계열을 예술계열로 판단하며, 그 외 학과는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.

Q3. [증빙자료 등록증]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서 발급한 등록증만 인정되나요?

→ 네. 해당 증빙자료는 팀장소삣 검증을 위함으로, 공연장 혹은 전시장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. 만약 공연 및 전시 기획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장소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.

Q4. [증빙자료 확인서] 공연장 또는 전시장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인정되나요?

- → 네. 만약 주최기관(단체)에서 공연 또는 전시장과 계약하여 학생 개인별로 확인서 발급 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2가지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 - 1) 공연 또는 전시장에서 발급한 주최기관이 활동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대관계약서
 - 2) 졸업자가 해당 공연 또는 전시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주최기관이 발급한 확인서

Q5. [증빙자료_계약서] 단체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서 상 학생 본인 서명이 없어도 인정되나요?

→ '20년부터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실적 인정은 본인 의사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하므로, 계약서의 본인 날인과 주요 계약 내용(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제7조(대 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) 및 제8조(표준계약서의 제정·보급)에 준하여 작성) 등이 누락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.

Q6. [기타] 유튜브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수익이 있는데 계약서가 따로 없습니다. 영상제작물로 인정되나요?

→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유튜브 등 온라인 1인 컨텐츠 제작 활동은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로 인정 불가합니다. 그러나 해당자가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프리랜서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.

Q7. [기타] 개인창작활동 실적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떤 활동을 제출해야 하나요?

→ 대표 실적만 입력하고, 증빙자료는 모든 실적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심의대 상으로 선정될 경우 대표 실적 외 작품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Q8. [기타]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 인정되나요?

→ 오프라인과 동일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전시로 인해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.

Q9. [기타] 과거에 인정받았던 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하면 올해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→ 아니오. 만약 과거에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 올해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심의를 통해 정성 평가로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. 따라서 심의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Q10. [기타] 보완서류인 예술활동증명(예술인패스)만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?

→ 보완서류가 있다면 제출해주세요. KEDI에서 검토 후 인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.